

■ 건설 · 부동산 판결

[대법원] 경매대금을 납부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도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대법원은 부동산 경매를 통해 점포를 취득하고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구분소유권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점포관리비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15다10097호 판결)

대법원은 경매에서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소유권자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